

個人年金損害保險 運用方向 및
損害保險會社의 經營課題

財務部 損害保險課
保險計理人 申杞澈

목 차

- I. 個人年金制度 導入背景
- II. 개인연금제도의 개요
- III. 손해보험회사 취급 개인연금의 내용
- IV. 個人年金 취급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득실
- V. 향후 商品運用方向
- VI. 個人年金 활성화를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經營課題

I. 個人年金制度 導入背景

- 平均壽命 연장과 老人人口의 비중 증가 추세

평균수명 및 노인인구 비중추이

	1990	2000	2010	2020
평균수명 (세)	71.3	74.3	76.1	77.0
60세 이상 (%)	7.4	10.7	13.7	19.5

- 公的年金制度 및 退職金制度의 보완

* 國民年金, 公務員年金 등 公的年金 가입자 비율 : 총 취업자의 32.5%

국민연금제도 및 법정퇴직금제도 각출비율

(단위 : %)

구 분			'88~'92	'93~'97	'98이후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1.5	2.0	3.0
	기업주	신 규	1.5	2.0	3.0
	부담분	법정퇴직금 전 환 분	0	2.0	3.0
	합 계		3.0	6.0	9.0
	사 업 비		정 부 부 담		
법정퇴직금(기업주전액부담)			8.3	6.3	5.3

- 퇴직시 平均賃金 대비 年金支給率(賃金對替率)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임

 각국의 임금대체율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공적연금	33	30	55	50	50	40
기업(퇴직금)	19.5	34	15	20	20	20
계	52.5	64	70	70	70	60

- 實名制 실시에 따른 제도 금융권으로부터의 資金離脫防止 및 金融貯蓄基盤의 확충
- 장기성 저축상품의 확대를 통하여
 金融機關의 안정적 長期資金 調達 및 運用을 도모함으로써 장·단기 金融市場간의
 효율적 연계 추진

[참 고]

3層 保障理論에 입각한 企業福祉制度

구 분		공 적 제 도	기업임의제도	개 인 준 비
死亡保障		· 산재보험제도 · 근로기준법 →공무중 사망보상 · 국민연금(유족연금) →공무외 사망보상	[保險] · 생명보험: 단체생명 · 손해보험: 상해, 근재, 여행보험 등 [其他] : 사망위로금	· 생명보험, 상해보험
醫療保障		· 의료보험제도 · 산재보험제도	[保險] · 단체건강보험 [其他] · 유급 병가제도	· 개인준비 건강보험
老後保障		[年金制度]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제도 등 [退職一時金制度] ·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제도	[年金保險] · 기업연금 (미도입) [退職一時金制度] ·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퇴직금누진제	· 개인연금저축제도
失業	건강 상실	· 실업보험 (미도입)	· 소득보상보험 [장기 : 미도입 단기 : 판매중지]	· 각종 후유장해보험
	실직	· 법정퇴직금제도 (일부 기여)	· 명예퇴직제도, 퇴직장려수당	—————

II. 個人年金制度의 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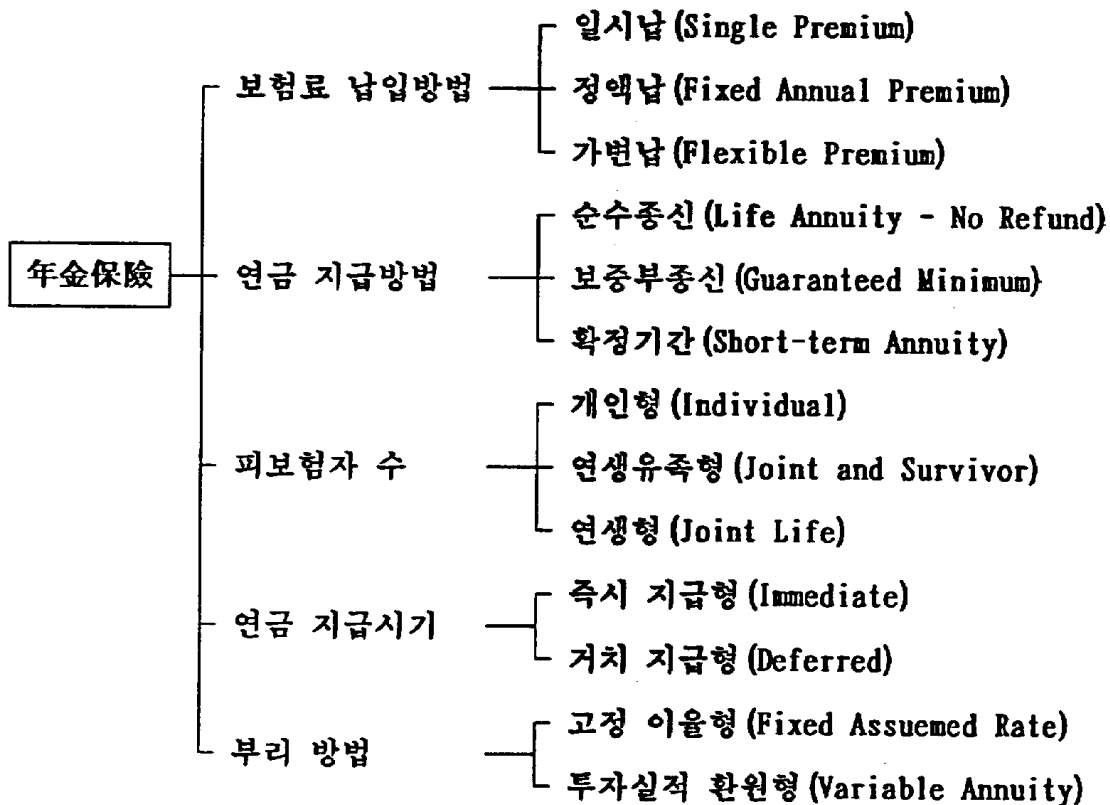
1. 個人年金制度의 種類

- 保險型 $\left[\begin{array}{l} \text{생명보험회사} \\ \text{우체국}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年金死亡率 (Annuity Mortality) 사용 早期死亡者 몫을 長期生存者에게 扶助}$

- 貯蓄型 $\left[\begin{array}{l} \text{은행} \\ \text{투자신탁회사} \\ \text{농.수.축협}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年金信託 (積立分 全액 본인 또는 유족 수취)}$

- $\left[\begin{array}{l} \text{손해보험회사}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長期傷害保險 + 年金信託} \Rightarrow \text{年金支給式 傷害保險}$

2. 生命保險會社の 個人年金保險의 分類 체계



3. 각국의 個人年金稅制 및 取扱機關

국 가	세 제 혜 택 및 취 급 기 관
미 국	[稅制惠澤 内容] ① 納入時 - 연간 2천달러 까지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는 4천달러) - o 단, 稅制 適格企業年金 가입자는 개인연금 세제혜택 없음 ② 年金 受領時 - 一般 所得으로 간주하여 課稅 [取扱機關] : 생명보험, 은행, 투자신탁 및 각종 저축기관
일 본	[稅制惠澤 内容] ① 納入時 - 최고 5만엔까지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와 별도 취급) ② 年金受領時 - 雜所得으로 간주하여 課稅 [取扱機關] : 생명보험, 농협공제, 채신보험 (은행, 신탁회사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영 국	[稅制惠澤 内容] ① 納入時 - 연령별로 연간소득의 17.5%~40%까지 소득공제 (공제한도 11,340~25,920파운드) → 自營業者 혹은 企業年金 非加入者만 혜택부여 ② 年金受領時 - 一般所得으로 간주하여 課稅하나 기금의 25% 또는 15만 파운드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 일시불 수령 가능 [取扱機關] : 생명보험, 은행, 신탁 및 주택금융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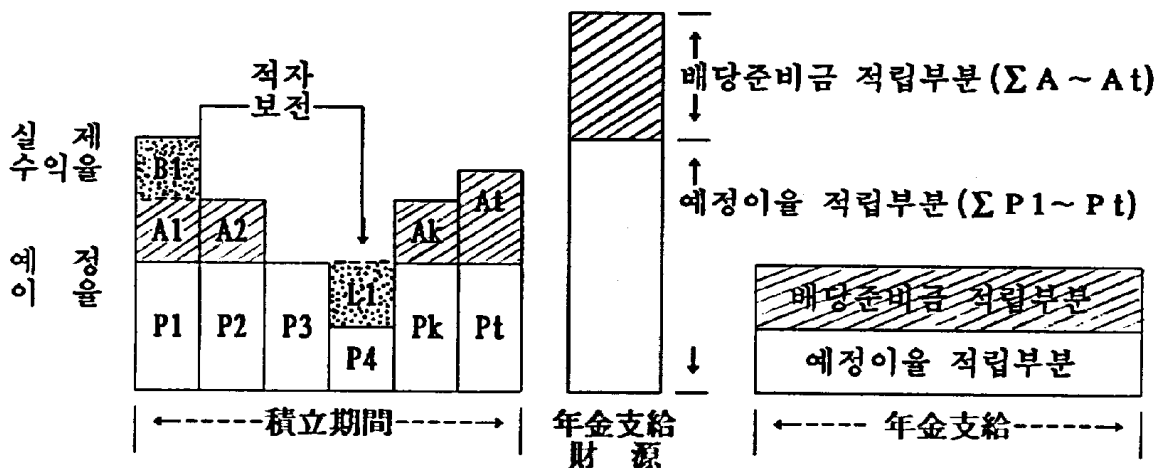
국 가	세 제 혜 택 및 취 급 기 관
캐나다	[稅制惠澤 内容] ① 納入時 - 企業年金 非加入者 - o 연간소득의 18%까지 개인연금 소득공제 (공제한도는 14,500 캐나다달러) - 企業年金 加入者 - o 위의 공제액에서 기업연금 가입으로 공제받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② 年金受領時 -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하여 연금소득의 17%까지 세액공제 (170캐나 달러 한도) [取扱機關] : 생명보험, 은행, 투자신탁 및 각종 저축기관
독 일	[稅制惠澤 内容] ① 納入時 - 독신자 4천마르크, 기혼자 8천마르크 * 생명보험회사의 양로보험에 대한 세제이며, 공적연금제도 및 기업연금제도의 발달로 個人年金稅制 自體는 없음 ② 年金受領時 - 確定年金 : 一般所得으로 간주하여 課稅 - 終身年金 : 利子所得 부분만 課稅 [取扱機關] : 생명보험

Ⅲ. 損害保險會社 취급 個人年金의 內容

1. 商品開發指針

- 豫定利率 : 5.0% ~ 7.5%내에서 자율사용
* 금리연동형은 사전 인가에 의해 업계 공동상품만 인가함.
- 危險保險料 구성비 : 3% 이상
- 區分計理를 통해 實際收益率과 豫定利率의 차이중 일부를 利率差配當準備金으로 적립하였다가 연금 지급시 基本年金에 가산 지급
- 實際收益率과 豫定利率의 차이중 일부는 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으로 적립하였다가 資產收益率이 豫定利率을 하회하여 金利差損失이 발생하는 해에 환입. 사용

契約者配當準備金 및 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の 사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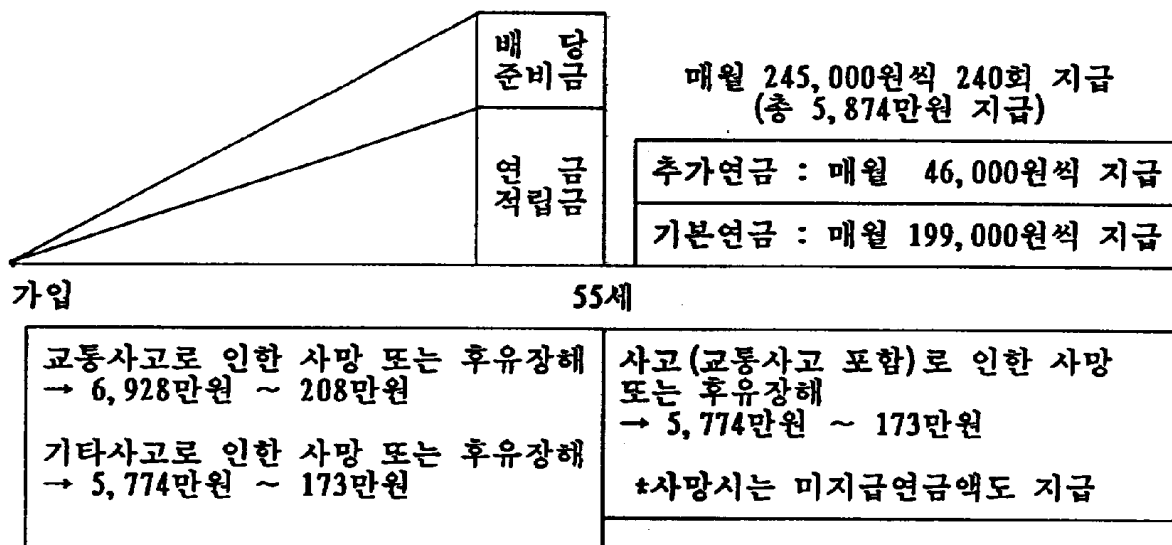


- $A_1 \sim A_t$: 이자율차 배당준비금이며, 가입자별로 구분계리
- B_1 :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으로 L_1 과 같이 금리차손실 발생시 적자보전
- L_1 : 자산수익율이 예정이율보다 낮아 금리차 손실 발생
- $P_1 \sim P_t$: 예정이율로 부리한 책임준비금

2. 業界 共同販賣 商品の 内容

(1) 金利固定型(판매명칭 : 미래희망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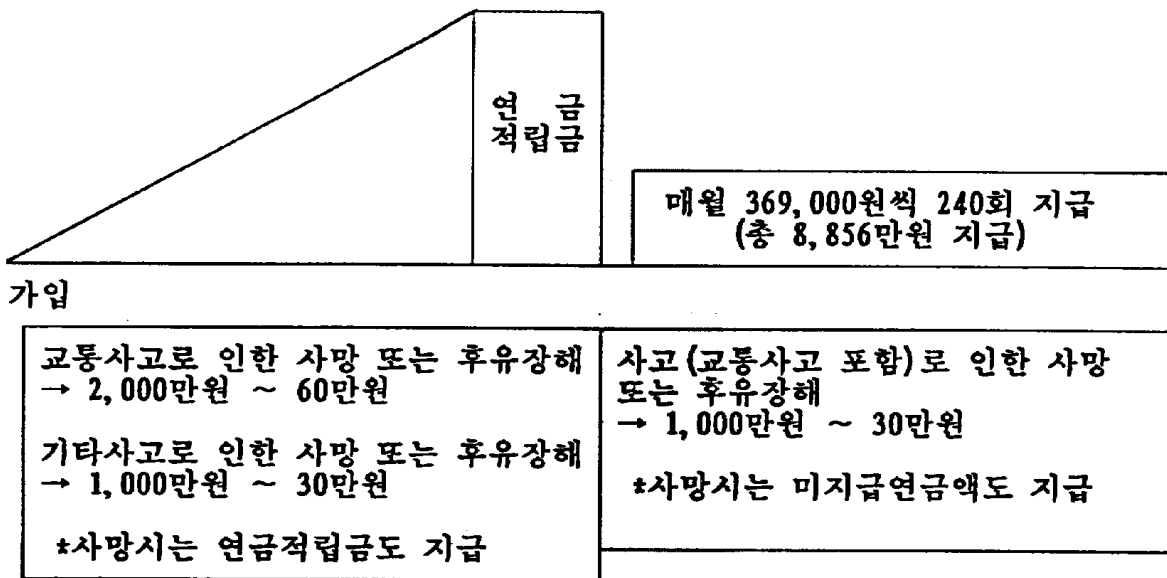
- 기준 : 월보험료 10만원, 40세가입, 55세 연금개시, 20년 정액지급형
예정이율 7.5%, 연금자산수익을 10% 가정시(배당율 2.5%)



- * 위 기본보장내용외에 암치료비용, 치료실비, 임시생활비, 일상생활배상 책임, 방어비용 등의 특별약관을 선택가입할 수 있음.

(2) 金利連動型(판매명칭 : 노후안심보험)

- 기준 : 월보험료 10만원, 40세가입, 55세 연금개시, 20년 정액지급형
 예정이율 정기예금금리×125%(현재 10.625%)
 정기예금금리는 보험기간중 변동하지 않고, 연금자산수익율이
 예정이율과 같다고 가정(추가연금이 발생하지 않음)



- * 위 기본보장내용외에 암치료비용, 치료실비, 임시생활비, 일상생활배상 책임, 방어비용 등의 특별약관을 선택가입할 수 있음.

(3) 金利固定型和 金利連動型の 長短點 비교

- 金利固定型 : 事業費率이 높아 募集手當이 많고 회사 이익기여도가 높음
- 金利連動型 : 표면수익율이 높아 販賣競爭力이 높으나, 회사 이익기여도는 낮음

3. 取扱機関別 商品特性 비교

구 분	손 해 보 험	생명보험 (우체국, 농.수.축협 단위조합)	은행 (투자신탁, 농.수.축협 중앙회)
수 익 율	· 금리연동형 : 정기예금이율 × 125% (현재 10.625%) + 실적배당 · 금리고정형 : 7.5% + 실적배당 實績配當은 회사별로 다르며, 정기예금이율 × 125%와 7.5%가 最低保障利率임.	· 손해보험의 수익율 체계와 같음	· 實績配當으로 기관 별로 다르며, 最低保障利率 없음
보험료납입	· 정기적 납입	· 정기적 납입	· 자유 납입
위험보장	· 교통사고 등 상해 사고를 고액보장 하고, · 상해치료비, 암치료 비용, 배상책임 등을 선택보장할 수 있음	· 질병사망 보장 · 암치료비용, 질병 입원, 상해특약 등 을 다양하게 선택	· 위험보장은 없음
연금지급방법	· 정해진 기간만 연금 지급	· 정해진 기간만 연금 지급하는 형과, 종신토록 지급하는 終身年金型이 있음	· 정해진 기간만 연금 지급
관련서비스	· 대출	· 대출, 정기건강진단, 노인촌 입주 등	· 대출

Ⅳ. 個人年金 취급에 따른 理解關係者의 得失

구 분	得	失
회 사	◦보험료 수입 및 자산규모 증대 ◦투자여건 개선 및 투자수익 증대	◦이익기반 약화 및 금리 Risk 증가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관리상 어려움이 큼 ◦타 장기상품의 판매위축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가입자	◦가입자의 선택폭 확대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One-stop shopping 가능	
모집조직	◦평생고객 확보 ◦수금수수료의 장기간 수령으로 소득 안정	◦금융기관간 경쟁심화로 신계약 확보에 애로
주 주	◦회사의 득과 같음	◦계약자이익배당 실시로 주주몫감소
정 부	◦개인연금제도의 조기정착 ◦금융산업 자율화 촉진	◦손해보험회사들이 저축성보험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손해보험 본연의 업무인 재산보호기능 약화

V. 향후 商品運用方向

1. 合理的인 商品設計

- 보험사업의 특성상 타 금융기관 대비 過다한 事業費 부가가 불가피하므로
상해보험 등 損害保險의 특성을 강화한 차별적인 商品設計

* 예) 노후안심보험 남자 35세, 55세 연금개시, 연금지급기간 10년형,
상해가입금액 1,000만원, 월보험료 10만원일 경우 월 연금액은 931,667원

→ 931,667원을 10.625%로 실적배당해주는 은행이 있다면 월납입액은
90,556원이면 가능 (잔여 금액으로 상해보험 6,000만원 가입가능)

- 보험가입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는 상품설계 금지

* 예) 교통사고만 보상하거나, 사망은 10배 보상하는데 장해 1급은 1배 보상 등

- 복잡한 給付設計의 제한

◦ 保險事業의 특성상 급부 설계를 복잡하게 하면 각 급부에 따르는 보상조건,
면책사항, 통지의무 등이 각기 다르므로

→ ①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②따라서 급부지급에 따르는 분쟁야기 소지가 크며,

③회사로서는 각 조건별 인수기준 설정, 유지관리 등 관리효율이 낮아짐

- 保險期間이 초장기이므로 危險等級간 위험율차가 크고, 통지의무가 중요시되는
급부설계시 신중한 검토 필요

- 提携商品 설계시 商品政策上 주의

○ 은행, 카드회사 등과의 상품제휴시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 신중한 고려 필요

- 기존 長期傷害保險이나 一般傷害保險과의 상품 Portfolio나, 모집인 수당유지
차원 등도 個人年金의 보장내용 설계시 고려

2. 約款體系의 간소화

- 각종 급부내용,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명료하게 표시

- 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고 표현하는데 유의

3. 契約者 配當率의 점진적 자유화

- 分離投資制度가 완전하게 도입되기 전까지는 손해보험 업계의 평균적인 投資實績
을 감안하여 일정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배당율을 결정하되,

- 分離投資制度를 완벽하게 도입한후 사후적 가입자 보호장치의 도입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 추진

4. 準備金 積立의 충실화 유도

- 個人年金의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배당부 상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준비금 적립의 충실화 유도

4. 豫定基礎率 策定の 합리화

(1) 豫定利率

[현행 이율체계]

- 정부 지침
 - 5.0% ~ 7.5%범위내 자율사용
 - 범위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업계 공동상품에 한해 인가
- 업계 판매상품
 - 고정금리형 : 7.5%
 - 연동금리형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125%(현재 10.625%)

[향후 정책방향]

- 固定金利型의 예정이율 사용범위는 정기예금금리 및 전반적 금리추세 등을 감안 신축적으로 운영
- 예정이율의 완전 자율 사용은 현단계에서는 고려치 않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예정이율 규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미국의 예정이율 규제

- 保險料 策定利率 : 완전 자유화
- 責任準備金 策定利率 : Minimum Surrender Value를 충족하도록 정부에서 규제

→ 보험료 이율에 대해서는 자유로우나,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
準備金은 충실하게 積立하도록 규제

(2) 豫定事業費率

- 납입기간별, 보험기간별, 보험료 규모별, 연금지급주기별 및 계약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豫定事業費 부가
- 회사별 經營效率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책정
- * '92사업년도 장기손해보험 실제 유지비율 : 원수보험료의 3.8% (2.4%~6.0%)

예정사업비 부가 체계 비교

구 분		손해보험회사 (미래희망)	생명보험회사 (J사 판매상품)	일본 손해보험회사 (연금불 적립상해보험)
부가 내역	신계약 비	· 초년도 영업보험 료의 50%	· 45/1000 (기본특약 포함)	· 보험금액현가 1,000円 당 0.3433円 ~ 0.4195円 *참고 : 대리점 수수료 납입기간별 초년도 보 험료의 1.03% (1년) ~ 51.50% (40년)
	유지비	· 납입기간중: 매회 보험료의 5% · 연금개시후 유지 비: 연금액의 0.5%	· 납입기간중: 매년 3/1000 + 보험료 의 1% · 완납후 유지비: 0.1/1000 → 유지비 적립금 으로 적립	· 연금개시전: 보험가입 금액 1,000円당 1년 0.3456円 ~ 0.4224円 + 보험료 × [납입기간별 0.07% (1년) ~ 10.7% (40년)] · 연금개시후: 기본급부 금액의 1% *참고 : 집금수수료는 납입기간별 1.03% (1년) ~ 11.35% (40년)
	수금비	· 매회보험료의 3%	· 매회보험료의 3%	· 유지비에 포함 책정
政府指針		· 총사업비율: 영업 보험료의 30%이내 · 예정신계약비: 초 년도보험료의 60%이내	· 총사업비율: 영업 보험료의 40%이내 · 예정신계약비: 30/1000이하	· 대장성 내부 Guide Line 운영

[참 고]

※ 실제 事業費 費目 및 性格

구 분	비 목	성 격
신계약비	[比例手當] · 모집수당, 성과수당 등	· 보험료 비례 또는 신계약 건수 등에 비례 지급
	[固定手當] · 기본수당, 활동관리수당, 설계사 수당, 트레이너 수당, 정착수당 등	· 회사의 모집조직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책정 · 신계약 건수, 예정신계약비 재원 및 회사기여도 등에 따라 배분
	[運營費] · 지점·영업소 운영비, 증원경비 등	
	[販賣促進費]	
	[間接費] ·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인쇄비 등	
유 지 비	[人件費] · 급여 임금, 상여금, 교육훈련비 등	· 보유건수, 해약건수, 클레임건수 및 예정유지비 재원등을 감안 책정
	[管理費] · 통신비, 수동광열비, 임차료, 전산비 등	
	[促進費] · 광고선전비, 접대비, 조사연구비, 회의비 등	
수 금 비	[比例手當] · 수금수당, 비월납 촉진비	· 보험료 비례
	[固定手當] · 활동수당, 복리수당, 수금장려수당 등	· 계속 수금실적 기준

(3) 豫定危險率 査定

- 손해보험의 위험율은 기본적으로 損害率 実績에 의한 保險金 支給確率으로써 매년 실제 損害率의 기록이 심하므로 위험율의 합리적 책정에 유의
- 保險期間이 초 장기이므로 危險 等級간 위험율차가 크고, 通知義務가 중요시되는 보장내용의 위험율 책정시 신중한 검토 필요
- 향후 예정위험율 책정에 대해서는 자유화 예정

VI. 個人年金의 活性化를 위한 損害保險會社의 經營課題

1. 募集組織의 體系的 養成

- 설계사 조직에 맞는 모집수당 체계 도입

⇒ 比例性 手當 ↓, 固定性 手當 및 각종 動機誘發促進 手當 ↑

會社 利益寄與度, 商品 Portfolio戰略, 標準活動 등을 평가 手當體系에 반영

募集手當 體系 비교

구 분	손 해 보 험	생 명 보 험
고정성수당	기본수당, 자격수당, 정착수당, 최저보장수당	기본수당, 최저보장수당, 전문수당, 정착촉진수당, 정착보장수당, 연수수당, 계보조직관리수당
비례성수당	모집수당, 유지수당, 수금수당	모집수당, 유지관리수당, 표준활동수당, 수금수당, 자유설계장려수당
조직관련수당	증원육성수당	증원육성수당, 설계사자격수당, 트레이너수당
복리후생수당	장학수당, 경조수당	특별우대수당, 장학수당, 저축지원제도, 경조수당, 탁아수당, 해피컴 지원수당
기 타	특별우대수당, 주임수당	무료건강진단제도, 설계사 신용대출제도, 휴양소 사용

☆ 특정회사를 비교한 표이므로 각사가 동일하지는 않음

- 選別導入을 통한 모집인의 定着率 향상
- 教育體系의 확립 (단계별 교육체계 수립.시행, 教育은 保險)
- 管理型 營業所長의 양성

2. 資産運用의 安定性和 收益性 제고

- 손해보험회사는 資産運營效率이 낮아 년도별로 資産收益率의 기록이 심함.
- 1년만기 정기에금금리×125%를 적용할 경우 과거 10년간 기준으로 金利差損失이 발생하는 년도가 많음

11개 손해보험회사의 과거 10년간 년도별 운용자산수익을 추이

(단위 : %)

구 분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11개사 평균 (A)	8.5	9.3	12.0	14.4	16.3	14.4	17.4	11.8	12.0	12.2
최고회사	9.6	9.8	15.3	18.7	21.5	17.8	22.6	13.9	14.7	14.3
최저회사 (B)	4.5	5.6	3.8	11.8	10.5	13.3	13.9	9.7	8.8	7.5
정기에금금리×125% (C)	11.3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0.6	10.6
A - C	-2.8	-3.2	-0.5	1.9	3.8	1.9	4.9	-0.7	1.4	1.6
B - C	-6.8	-6.9	-8.7	-0.7	-2.0	8.0	1.4	-2.8	-1.8	-3.1
B - 7.5%	-3.0	-1.9	-3.7	4.3	3.0	5.8	6.4	2.2	1.3	0.0

- 외국과 같은 低金利時代 도래시 손해보험회사의 金利Risk가 커질 수 있음

주요국의 金利變動 추이

(단위 : %)

구 분	일본	미국	영국	독일
'75	6.75	7.25	12.5	7.0
'80	7.5	21.5	14.0	9.0
'85	5.5	9.5	11.5	5.5
'90	8.25	10.0	14.0	8.5
'91	6.63	6.5	10.5	9.75
'92	4.5	6.0	7.5	9.5
'93	3.38	6.0	5.5	6.75

주) 각국별 Prime Rate기준임

- 1년만기 정기에금금리×125%를 선진국의 최근 資産收益率과 비교시 金利差 損失

1년만기 정기에금금리×125%와 자산수익율의 비교

구 분		1년만기 정기 예금금리 (A)	A×125% (B)	자산수익율 (C)	C - B
미국	'90	10.0	12.5	8.9	△ 3.6
	'92	6.0	7.5	8.1	0.6
일본	'90	5.51	6.89	6.22	△ 0.67
	'92	3.94	4.93	4.33	△ 0.60

- 生保協會 추정은 '90년대 말에 금리연동형은 赤字, 금리고정형은 利益 발생

【상품별 부담금리 추정】

[가정] ①2004년 회사채 수익율 8%로 하락

②1994년 회사채 수익율 연평균 12% 추정 → 보관법에 의해 1999년 10% 예상

구 분	1999	2004
회사채수익율	10.00%	8.00%
정기에금금리	7.70%	6.30%
자산운용수익율	9.30%	7.95%

[1999년의 金利差 損益率]

구 분	負擔金利	資産收益率	차이
전통형 개인연금	7.5%	9.3%	1.8%
금리연동형 연금	9.6%	9.3%	△ 0.3%

주) 계산결과만을 소개한 자료임.

⇒ ALM技法, Duration 運用, Immunization Index投資 등 新種投資技法 도입

3. 損益管理 철저

- 11개 손보사 모두 상장주식회사이므로 利益示顯이 필수

11개 손해보험회사의 년도별 당기손익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89	'90	'91	'92	'93
11개 손보사	261	340	250	△ 313	△ 1,579
손보사전체	674	447	△ 95	△ 1,506	△ 1,814

⇒ ①損益管理에 입각한 事業費 책정, 商品 Portfolio戰略 개발

②價格自由化에 철저한 대비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요율 추종은 利益基盤 약화로 직결

③統計 및 經營分析 전담 保險計理人 양성

4. 損害保險 본연의 업무에 충실

- 經營의 기본은 綜合安心서비스産業으로서의 損害保險

- 金融機關的 業務는 부수적으로 취급

* 타 금융기관과의 收益率側面만을 강조한 個人年金 영위시 경쟁력 열세에 봉착
生命保險會社는 보장성이 강화된 전통형 연금보험 주력 예정

- 募集組織 能力과 會社規模에 맞는 保險商品Portfolio

* 매출액, 현금수지, 투자수지, 손익기여도 등을 계량화하여 Portfolio구성

보험종목별 회사에의 기여도

구 분	화재.해상	자동차	장 기	개인연금
매출액기여도	小	大	大	中
현금수지	中	中	大	大
투자수지	中	小	大	大
이익기여도	大	小	大	小
관리효율	大	小	中	小

주) 효과의 정도만을 비교한 것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해 계량화가능

5. 職域全擔 募集組織의 육성 및 販賣채널의 다양화

- 자동차, 상해, 개인연금, 여행, 골프보험 등을 One-stop service 가능
⇒ 職域全擔 專門 募集組織 육성 필요, 회사이미지 개선에도 도움
- 個人年金은 표준화가 가능하므로 Direct Mail이나 窓口販賣도 도입 가능

6. 專門人力の 養成

- 전략적 人力配置 및 양성
 - * 事業費效率을 중시하는 인력배치
- 金融産業의 자유화, 보험상품 價格自由化, 個人年金 시행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專門人力 양성 시급
- 요율전담 보험계리인 양성, 投資專門家 양성
- 保險研修院의 활용 극대화

個人年金保險 運營方案에 대한 再考
- 일본의 經驗을 中心으로 -

保險開發院 調查研究室
강중철 과장

목 차

1. 조사목적

2. 일본의 운용경험

가. 환경변화

나. 판매현황

다. 예정이율문제

라. 실효해약 및 부실판매

마. 상품포트폴리오

3. 미국의 개인연금보험

4. 우리나라 개인연금보험의 운용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가. 전통형 개인연금보험의 예정이율 문제

나. 금리연동형 개인연금보험의 기준금리

다. 변액연금의 도입 검토

라. 질우선 경영방침의 지속 추진

마. 보험이미지 제고 및 장기 계약유지 유도

1. 調查目的

高齡化社會의 급진전, 최저수준의 생활만을 보장하는 公的年金制度, 企業年金制度의 미도입 상태에서 먼저 시행된 個人年金保險制度는 파격적인 稅制惠澤에 힘입어 그 需要가 대단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에 대대적으로 판매되었다. 일반 국민들의 老後對策에 대한 관심도는 날로 증가하여 각 금융권은 개인연금 판매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보험산업도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生命保險會社가 취하고 있는 市場先占戰略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資料의 觀點은 기본적으로 매우 장기적이다. 개인연금보험의 保險期間이 10년 이상 초장기이고, 보험이 타 금융권에 비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年金의 平生支給이라고 조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개인연금보험 商品構造는 장기적으로 보아 어느정도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年金의 豫定利率은 銀行이나 投信의 豫定수익율과 달리 전 보험기간동안 보장되어야 한다는 差異點을 가지고 있어 향후 10년, 20년후의 금리상황은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에 본 자료는 日本과 美國의 경험을 토대로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가상적인 장기금리시나리오하에서 豫定利率危險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고 장기적으로는 高保險料率-高配當政策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配當豫示의 許容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금리연동형 개인연금보험의 부리이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에 연동시키고 있으나 향후 금융권간의 競爭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保險産業 獨自의 金利體系의 構築이 요구된다. 또한 一般 消費者들이 수익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 조만간 投資收益을 직접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變額年金의 導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個人年金保險時代의 개막에 즈음하여 完全販賣를 통해 보험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개인연금보험에만 집중되어 있는 販賣力을 조만간 保障性保險 등으로 분산시켜 상품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2. 日本의 運用經驗

가. 환경변화

- 1960년대에는 개인연금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의 결여로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음
- 1970년대에는 초중반에 걸친 높은 물가상승율로 인하여 年金의 實質價值 保填이 어려워 개인연금보험 판매 중지
 - 明治生命은 1973년 8월부터 1979년 5월까지 개인연금보험의 판매를 중지했음
 - 개인연금보험이 판매중단되기 직전인 1973년에는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11.7%나 증가하였고 이후 상당기간동안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음
 - 개인연금 판매 재개는 물가가 안정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서야 가능했음

소비자물가 상승율

연도	1971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5	1990
상승율	6.5	11.7	23.3	11.8	9.5	8.1	4.1	3.8	7.8	2.0	3.1

- 1979년에 개인연금보험의 판매가 재개된 이후 1980년대부터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증가, 세제지원 등에 힘입어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짐
 - 1981년 9월 簡易保險이 종전의 우편연금을 개정하여 개인연금으로 판매되었고, 생보업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新個人年金保險 개발
 - 1980년대 銀行, 信託銀行 등의 개인연금시장 진출이 이루어졌고, 세제혜택이 부여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폭의 시장 점유
 - 1984년에는 個人年金保險料 所得控除制度가 도입되었고 생보업계는 별도의 연금보험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연금보험상품에 세제적격 제도특약을 추가하여 대응하였음
 - 1990년에는 생명보험료공제와 동액으로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금액이 현실화되었음

개인연금보험 및 생명보험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구 분	조세유형	1984년	1990년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소득세	50,000엔	50,000엔
	지방세	35,000엔	35,000엔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소득세	5,000엔	50,000엔
	지방세	3,500엔	35,000엔

나. 판매 현황

1) 판매 및 가입 실태

- 1980년대 접어들어 高齢化社會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물가가 안정되어 個人年金 需要가 증가하여 개인연금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1980년대 후반 신계약전수의 급증
 - 1984년에는 개인연금보험료 所得控除制度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공제 한도가 낮아 시장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 1987년과 1988년에는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후대비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생보사의 적극적인 판매노력으로 新契約件數가 급증하였고, 특히 中小型 生保社는 第2地方銀行과 제휴하여 保險料貸出方式으로 前期全納 個人年金契約를 적극적으로 판매하여 급성장 시현
 - 1990년에는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의 대폭 인상에 따라 신계약 전수는 전년대비 39.2% 증가

개인연금보험의 신계약 및 보유계약 전수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신계약	32	45	51	50	57	77	161	152	211	228	259
증가율	-	40.8	13.5	-2.5	13.9	35.5	108.3	-5.7	39.2	8.2	13.5
보유계약	114	150	186	219	260	320	458	580	752	923	1102
증가율	-	30.9	24.1	17.9	18.4	23.0	43.3	26.8	29.5	22.8	19.5

단위 : 만건, %

출처 : 생명보험 Fact Book

-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個人年金保險 世帶加入率は 1991년 현재 28.5%로 생명보험(93.1%)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
이어서 개인연금보험의 잠재적인 成長 可能性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1988년 조사에서는 3년전에 비해 세대가입율이 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1988년 개인연금보험의 신계약건수가 급증한 것과 일치함
 - 世帶主 年齡別 加入率을 보면 큰 변화를 찾기는 힘들지만 40대중반에서 50대 초반의 가입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 年金保險이 어느정도 성숙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는 세대가입율이 약 40% 정도임

개인연금보험 세대가입율

연도	1982	1985	1988	1991
세대가입율(%)	6.2	8.4	16.4	28.5

출처 : 생명보험 Fact Book

세대주 연령별 가입율

연령	- 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
1988	10.2	15.1	17.2	19.9	20.0	19.8	18.1	12.1	10.0
1991	13.8	24.3	30.0	29.5	34.0	36.3	30.3	25.1	21.5

출처 : 생명보험 Fact Book

- 明治生命의 新契約者 構成比를 보면 대체로 20대가 35%, 30대가 35%, 40대가 20%, 기타가 10%임
 - 젊은세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젊었을 때 가입하면 節稅效果가 크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모집인의 주된 활동대상이 기업이기 때문임
 - 이에비해 簡易保險의 가입자는 40 - 60대가 많은데 납입기간이 짧은 상품이 많고, 最低年金年額(생보:30만엔, 간보:18만엔)이 낮고, 가입기간이 비교적 짧아 고연령층에 적당하기 때문임
- 金融機關別 個人年金保險 加入實態를 보면 민영생명보험이 58.5%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세제혜택이 생명보험(공제 포함)에만 국한

- 年金年額에 대한 최저보장, 종신연금의 존재, 다양한 특약의 부가로 인한 소비자 수요 증폭, 판매조직의 강세도 생명보험회사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일조하고 있음
- 그러나 1985년 이후 민영 생명보험회사의 지배적인 위치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우정국의 郵便年金, 農協(JA)의 연금공제, 全勞濟(전국노동자 공제 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예금공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 및 신탁은행의 연금형예금은 세제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나타냄
- 최저연금연액이 낮고 보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편연금 및 연금공제의 상품특성이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40 - 50대의 수요에 부합, 이들의 가입이 급증

금융기관별 개인연금가입 실태(복수응답)

금융기관	생보사	우정국	농협	은행·신탁은행	증권회사	전노제	기타
1982	64.0	14.3	17.5	7.3	0.6	-	-
1985	67.8	9.9	9.6	7.2	0.7	4.8	4.3
1988	62.4	12.5	7.9	12.4	1.0	10.0	3.4
1991	58.5	17.0	13.3	11.4	1.2	8.5	3.4

주 : 생보사는 개인연금보험, 우정국은 우편연금, 농협은 연금공제, 은행·신탁은행은 연금형예금, 전노제는 예금공제로 판매하고 있음

출처 : 생명보험 Fact Book

2) 소형사의 판매전략

- 소형사는 대형사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품, 판매대상 및 지역 등에 있어서 特化戰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니생명이 고소득층에 특화하여 성공한 실례가 있음

다. 예정이율문제

- 個人年金保險 豫定利率은 개인생명보험과 동일하며 中途解止利率도 적용하

고 있는데, 개인생명보험 예정이율 및 자산운용 수익율의 추이는 보면 예정이율 리스크가 발견됨

- 1985년 4월부터 10년 이하 個人年金保險의 豫定利率은 6.25%였고 그 당시의 資産運用收益率에 견주어 보아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5년이 경과한 1991 사업년도의 자산운용 수익율이 5.02%로 크게 떨어져 예정이율 리스크가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와같은 利差損은 死差益, 有價證券 賣却·評價益에 의해 보전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실현이익 등의 충당으로 지속적인 損失保填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 이후 계속해서 예정이율을 낮추었으나 지속적인 자산운용환경의 악화로 豫定利率危險은 해결이 용이하지 않으며, 원리금을 보증하는 금융상품 중 예정이자율이 3%를 초과하는 상품이 없고,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8 - 1.85%이며 지속적인 金利下落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3.75%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개인생명보험 예정이율 추이

연도	10년 이하	10 - 20	20년 이상
	4%	4%	4%
76.3	5.5	5.5	5.0
81.4	6.0	5.5	5.0
85.4	6.25	6.0	5.5
90.4	5.75	5.5	
93	4.75		
94.4	3 - 4%의 범위요율로 인가받았으나 3.75 이용, 명치생명은 이후 일시납양로보험에 대해서만 3.25% 이용		

장기프라임레이트 및 생보업계 자산운용수익율

연도	FY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장기프라임레이트	7.9	7.4	6.4	5.2	5.5	5.7	6.8	7.5	6.0	4.9
자산운용수익율	7.72	7.77	7.72	7.48	6.96	6.76	6.99	6.43	5.02	4.01

주 : 장기프라임레이트는 회계년말 수치이며, 자산운용수익율은 1988 회계년도 이전에는 (이자배당소득+금전신탁운용익)/경과자산에 의해서, 1988 회계년도부터는 (총자산운용 수익 - 운용비용)/일일평균에 의해서 계산되었음

출처 : "결산의 개요에 대하여", 생명보험경영, 각년 9월

라. 실효해약 및 부실판매

- 개인생명보험 및 개인연금보험의 失効解約率은 1990년을 기점으로 하락세에서 증가세로 반전
 - 失効・解約에 따른 追徴課税가 없고, 20 - 30대의 신규가입이 늘어났기 때문임
 - 실효해약의 원인중 다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이 緣故販賣 또는 不實販賣의 결과임
 - 생보상품의 예정이율이 簡易保險 등의 예정이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음

개인생명보험 및 개인연금보험의 실효해약율 추이

연도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개인생명	7.9	8.2	8.0	7.6	7.0	6.5	5.8	5.4	5.5	5.7	6.0
개인연금	14.3	13.9	13.2	11.1	8.9	7.2	6.6	6.0	6.9	8.1	8.8

출처 : 생명보험 Fact Book

실효해약의 원인

항목	보험료를 낼 수 없어서	직립할 돈이 필요해서	의리상 가입해서	소액이라 보험의 가치가 없어서	다른 보험·공제로 바꾸었음
1988	19.3	19.0	24.2	11.9	33.8
1991	13.2	19.2	25.2	11.4	33.2

출처 : 생명보험 Fact Book

마. 상품포트폴리오

- 收入保險料를 기준으로 하여 保險種類別 構成比의 推移를 구해본 결과 개인보험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해왔고, 개인연금 및 단체연금의 비중은 계속적인 증가추세 시현
 - 1990년대 즈어들어 수입보험료의 구성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개인

보험이 60% 정도, 개인연금이 6 - 7% 정도, 단체연금이 26%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보험종류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보험종류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개인보험	77.7	78.3	76.9	74.7	65.2	62.7	60.9	60.2	60.3
개인연금	2.2	2.4	2.9	4.4	9.6	7.6	5.9	6.3	6.7
단체보험	6.6	6.0	6.6	5.4	4.5	4.4	5.0	5.2	5.3
단체연금	12.4	12.3	12.5	14.3	19.4	23.8	26.3	26.8	26.3
재해보험	0.8	0.9	0.9	1.0	0.9	1.0	1.1	1.0	1.0
재형연금	0.1	0.1	0.1	0.1	0.2	0.2	0.2	0.2	0.2
의료보장	-	-	0.0	0.0	0.0	0.0	0.1	0.1	0.1
수재보험	0.1	0.1	0.1	0.1	0.1	0.1	0.5	0.1	0.1
합 계	129,959	154,798	187,418	217,259	263,791	280,403	273,207	282,400	295,301

단위 : %, 억엔
출처 : 생명보험 Fact Book

3. 미국의 개인연금보험

- 미국에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나 Keogh Plan과 같은 稅制 適格貯蓄制度가 있으며 1992년말 현재 총예수금은 8,020억달러로 이 중 생보업계는 7.7%를 차지하고 있음
- 총예수금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142.6%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81.9% 증가하는데 그쳐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Mutual Fund의 경우 동 기간에 187.6% 증가하여 점유율이 30%에 육박
- Mutual Fund 占有率의 급격한 증가는 소비자들의 高金利選好意識을 반영하고 있음
 - Equitable Life Assurance(N.Y)의 Nest Egg Study(1994.4)에 의하면 194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 600명중 51%는 中·高 危險 投資戰略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응답
 - 이에따라 생보사는 변액연금 등을 통해 투자수익율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동 설문조사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저축목적은 노후대비가 44%, 자녀교육이 28%, 주택구입 및 확장이 9%,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재원마련이 8%를 차지하였음

IRA 및 Keogh Plan 예수금의 금융기관별 구성비

연 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증가율
생명보험	금액	34,005	44,020	51,940	47,150	55,410	61,855	81.9%
	구성비	10.3	11.5	11.7	7.9	7.8	7.7	
Mutual Fund	금액	82,300	96,790	124,720	142,435	186,431	236,720	187.6%
	구성비	24.9	25.4	28.0	23.8	26.2	29.5	
상업은행	금액	82,300	93,900	108,700	130,300	147,700	147,100	77.4%
	구성비	25.1	24.6	24.4	21.7	20.8	18.3	
Mutual Saving Bank		4.8	4.0	5.1	4.0	3.3	3.0	48.1%
Savings & Loan		28.1	28.1	24.9	18.3	15.3	12.2	5.6%
Credit Union		6.8	6.4	5.9	4.8	4.5	4.1	44.7%
Self-driven Account		-	-	-	19.5	22.1	25.2	-
합 계		330,530	381,824	444,958	599,585	711,534	802,016	142.6%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Life Insurance Fact Book,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

- 한편 미국에서는 Roll-over제도가 있어 Mutual Fund 등을 통한 적격개인 저축의 예수금을 적립기간 종료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개인연금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제혜택이 계속해서 주어지며, 이에따라 상당수 전환되고 있음
- 은행, 신탁 등은 기금적립업무만 할 수 있으며 年金式支給은 불가능하며 가입자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인출해야 함
- 보험회사는 기금적립업무 뿐만 아니라 연금지급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4. 우리나라 개인연금보험의 운용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保險期間의 長期化로 개인연금보험은 예정이율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객관적인 配當制度의 構築을 통해 高保險料率-高配當政策을 추구해야 하고, 保險料를 일정기간 경과후 정기적으로(예를들어 10년후 매5년마다) 변동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음

- 生命保險 獨自의 金利體系를 구축하여 金利連動型 個人年金保險의 附利利率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타금융권과의 收益率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실적배당형인 變額年金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個人年金保險의 完全販賣가 이루어지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個人年金 市場先占戰略에 의한 販賣力의 集中으로 상품포트폴리오상의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保障性保險 등에 대한 판매노력도 기울여 질우선 경영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임
- 생명보험사의 이미지를 “老後生活 設計의 基本軸”으로 인식시키고 소비자의 계약 장기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수발 서비스, 유료양로원, 연금홈과 같은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附帶事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전통형 개인연금보험의 예정아울 위험

1) 금리시나리오

- 현재 대표적인 시장금리로는 銀行保證付 3年滿期 會社債 流通收益率(이하 회사채 수익율)이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널리 이용되고 있음
- 韓基經濟연구소의 “1994 - 2000年 中長期 經濟展望(1994.4)”에서는 2,000년에 會社債收益率이 7.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 경제성장율의 둔화와 경상수지의 흑자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는 總貯蓄率이 總投資率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債券市場의 開放에 따라 해외자본이 대거 유입될 것임
 - 名目金利는 實質金利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값인데 1990년대 후반에는 대체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實質金利를 결정하는 資本收益率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韓基經濟연구소의 중장기 금리전망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금리	12.2	11.8	10.6	9.8	9.3	8.9	8.3	7.8

- 同 研究所의 中長期金利展望을 다소 수정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가상의 금리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음
 - 1994년도에는 市場金利가 현재의 12.4%보다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大宇經濟研究所의 “향후 채권수익율 및 채권시장 전망”에서는 설문조사 대상기업이 시장금리는 평균적으로 12.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나타남
 - 1995년도에는 기업의 본격적인 資金需要에 의한 金利引上效果가 해외자 금융입 및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의 변화에 의한 金利下落效果와 상쇄되어 1994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시장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 1996년에는 경기가 후퇴하여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資本市場開放의 폭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수준이 1% 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가정
 - 金融改革 5個年計劃에 비추어 보아 債券市場은 1998년 정도에 실질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1998년도에는 경기가 저점에 위치하여 금리가 1.5% 포인트 정도 떨어져 한자리수 금리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상정하였음. 참고로 대우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會社債收益率이 한자리수로 진입하는 豫想時點에 대해 18.6%는 1995 - 1996년, 41.9%는 1996 - 1997년, 37.2%는 1997 - 2000년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999년과 2000년에는 이미 資本市場 및 債券市場이 개방되었다 하더라도 國際金利가 상승국면에 있고 또한 景氣循環上 國內景氣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WEFA(Warton Econometric Forecasting Associates)는 유로달러(90일분)금리를 1994년 4.87%, 1995년 5.76%, 1996년 5.76%, 1997년 5.95%, 1998년 6.31%, 1999년 6.50%로 예측하고 있고, 1988년부터 1993년까지 금리가 계속 하락하여 금리순환상 2000년부터는 국제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長期金利는 短期金利에 일정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 되고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더라도 환리스크 등을 감안한다면 국제금리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따라서 2001년부터는 會社債 收益率이 8.0% 전후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향후 10년간의 금리 시나리오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금리	12.4	12.4	11.5	11.0	9.5	9.0	8.5	8.0	8.0	8.0

2) 예정이율위험

- 현재 傳統型 個人年金保險의 豫定利率은 5 - 7.5%에서 결정되며 대부분의 생명회사들이 7.5%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기의 금리시나리오에 의하면 앞으로 상당기간동안은 豫定利率危險을 걱정할 필요는 없음
 - 일본의 경우 1985년 4월에 保險期間이 10년 이하인 個人年金保險의 豫定利率이 6.25%이었고 1984 사업년도 資産運用收益率이 7.77%여서 양자의 차이가 1.52% 포인트였으며, 예정이율이 자산운용수익을 상회하는 데는 7년이 소요되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1993 사업년도 총자산수익율은 10.3%로 예정이율 7.5%에 비해 2.8% 포인트 높아 예정이율이 총자산수익율을 상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日本에 비해 훨씬 길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개인연금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 平生保障이고 年金 加入年齡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보험기간의 초장기화로 傳統型 個人年金保險은 상품구조상 豫定利率危險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第一生命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후준비의 시작연령으로 71.35%가 31 - 45세이며(36 - 40세가 24.29%, 41 - 45세가 23.72%, 31 - 35세가 23.34%)
 - 第一生命의 조사결과 개인연금보험의 가장 큰 장점으로 54.46%가 연금의 평생지급을 꼽았음
- 超長期商品의 豫定利率危險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高保險料率-高配當政策을 추구해야 하고, 豫定利率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후 보험료를 변동시키는 방안도 한번쯤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 高保險料率로 인한 보험판매상의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해 配當豫示制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배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철저한 公示가 필요

- 일본 생보업계에서도 高料率-高配當政策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음
- 영국에서는 변액보험의 일종인 Flexible Whole Life의 경우 계약후 최초 10년간은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으나 이후 5년마다 보험료가 수정됨
-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Revalorization(화폐가치의 회복, 가격의 인상)의 개념이 이용되고 있음
-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해 가입년도에 따라 保險料가 차이가 나는 것은 契約者間 衡平性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나. 금리연동형 개인연금보험의 기준금리

1) 현행 기준금리의 문제점

- 현재 金利連動型 個人年金保險은 1년만기 정기에금금리의 125%를 부리하고 있는데 향후 이루어질 금리자유화 및 금융권간의 경쟁심화를 감안하면 문제가 있음
- 1년 만기 정기에금금리가 자유화될 때 市中銀行 上位社의 평균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生保産業 獨自의 金利體系의 構築이라는 측면에서 이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음

2) 기준금리의 구비요건

- 기준금리 설정시 適應性, 安定性, 合理性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적응성이란 수신금리가 수시로 변하여 市場實勢金利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함을 의미함
- 미국의 9개 지역 60개 은행이 취급하는 단기금융시장 예금구좌(Money Market Deposit Account)와 수퍼 양도가능성 지불증서(Super Negotiable Order of Withdrawal)의 25개월간 수신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金利變

動의 頻度와 受信高 占有率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실세금리반영정도는 예상외로 相關關係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 논문은 금리의 수시변경은 활발한 戰略樹立의 결과이며 새로운 이자율 변경을 위한 준비와 홍보가 고객의 만족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수신고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하였음.

-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리이율을 일정한 기간, 예를들면 분기별로 변경하여 적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실세금리는 市中資金事情, 金融政策이나 物價上昇率 등에 대한 期待要素, 시장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附利利率은 이러한 요소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실세금리와 괴리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안정성은 부리이율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生保社의 健全性を 해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함.
 - 수신금리가 지나치게 높으면 자산운용부문에서 고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생명보험사의 건전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도 있음
 -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중대형사의 파산사태는 모두 투자전략에 실패에 기인하였음
- 합리성이라 함은 부리이율의 결정에 이용되는 요소의 선정이나 적용비율의 선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서는 아니됨을 뜻함

3) 기준금리의 설정

- 금리연동형 개인연금보험의 부리이율은 市場實勢金利 및 保險의 特殊性을 반영하는 요소를 감안한 바스켓방식에 의한 생보산업 독자적인 금리체계에 의해 결정하되 보험회사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일정한 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CD금리, 거액RP, 거액어음매출 등의 발행금리 결정시 복수의 금리로 바스켓을 형성하고 이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 예를들어 CD발행금리는 (회사채유통수익률 * 60%) + (당좌대출금리 * 40%)

20%) + (평균조달금리 * 20%)에 의하여 산출됨

- 바스켓 구성요소로는 再割引金利, 會社債收益率, 資産運用收益率, 貸出金利, 豫定利率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회사채수익률은 市場代表金利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금융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표기능이 더욱 제고될 것이며 생보업계의 채권 투자 비중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이용되어야 할 요인임
 - 예정이율은 生保産業의 特性을 반영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보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 貸出金利는 앞으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보산업의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결정시 이용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 들지만 현재 대출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을 것임
 - 재할인금리는 안전성 측면에서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정책금리로서 그 변화가 시장실세금리와 변동에 반영되며 또한 안정성은 예정이율을 통해서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산운용수익률은 금리와 관계있는 투자부문인 채권, 대출 이외에 부동산이나 주식에 의해 크게 변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연동형보험의 부리이율을 결정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자산운용수익율은 전년도 수치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산업의 급박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회사채수익율과 예정이율을 적정비율로 결합하여 일정한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한시적으로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는 있음
- 회사채수익율과 배당부보험의 예정이율을 이용하여 다음 4가지 식에 의해 부리이율을 산출하고 이들 자산운용 수익율 12개월 이동평균치와 비교한 결과 회사채수익율과 예정이율을 각각 70% 및 30%씩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① $\text{MIN}\{BY_3, BY_{12}\} * 0.5 + \text{예정이율}(7.5) * 0.5$
 - ② $\text{MIN}\{BY_3, BY_{12}\} * 0.6 + \text{예정이율}(7.5) * 0.4$

$$\textcircled{3} \text{ MIN}\{BY_3, BY_{12}\} * 0.7 + \text{예정이율}(7.5) * 0.3$$

$$\textcircled{4} \text{ MIN}\{BY_3, BY_{12}\} * 0.8 + \text{예정이율}(7.5) * 0.2$$

단, BY_3 은 회사채수익율 3개월 평균치, Y_{12} 는 회사채수익율 1년 평균치

다. 변액연금의 도입 검토

- 미국의 경험에서 Mutual Fund의 급성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고금리선호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들어와 生命保險에서 簡易保險 등으로의 契約離脫現狀도 금리에 대해 민감해진 소비자들의 행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金融貯蓄의 內譯別 構成比 推移를 보면 일반 소비자들의 수익율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민감해졌음을 알 수 있음

금융저축의 내역별 구성비 추이

내역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은행저축	43.6	31.8	22.1	22.0	21.1	20.0
비은행저축	27.3	32.5	32.4	31.9	32.7	32.2
유가증권	20.6	21.4	25.8	26.2	23.8	25.4
은행신탁	8.5	14.3	19.7	19.9	22.4	22.5

단위 : %

주 : 은행저축은 저축성예금과 CD의 합계

비은행저축은 신탁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저축

유가증권은 국·공채, 금융채, 주식, 회사채의 합계

출처 : 재무부, 재정금융통계, 각년호

- 이에 따라 기존의 전통형 또는 금리연동형으로는 타금융권과의 收益率競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실적을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환원하는 변액연금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라. 질우선 경영방침의 지속 추진

- 1993년에는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과거와 같은 量的成長을 지양하고 質的成長을 강조함으로써 보험본연의 保障機能을 강화하였음.

- 단기 저축성 상품보다는 중장기 상품과 보장성 상품의 판매에 주력하였음
- 비가동 판매조직을 정비하고 모집인의 정착률을 높이는 한편, 판매조직의 고급화를 추진하였음
- 유지율의 개선에 힘씀
- 質經營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事業費 増加率을 보면, 91년 32.2%, 92년 24.0%, 93년 17.6%로 나타나 93년에 처음으로 10%대로 진입하였음.
 - 募集人 増加率은 91년 9.5%, 92년 8.4%, 93년 1.8%로 나타나 93년에 모집인의 대폭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解約還給金 増加率은 91년 20.8%, 92년 54.6%, 93년 12.0%로 나타나 93년에는 과거에 비해 해약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
 - 93년도 당기순이익은 1,282억원으로 92년대비 46%가 늘어났음
- 個人年金保險의 판매는 기존 고금리상품에서 발생했던 금리리스크를 회피하고 장기자금을 조달·운용한다는 측면에서, 질우선 경영의 일보전진이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비가동 조직과 정착율이 하락할 위험을 가지고 있음
 - 초기 판매강화를 위한 모집인 대량 도입은 과거와 같은 大量導入·大量脫落現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개인연금보험 판매에 치중하고 보장성보험 판매를 등한시함으로써 상품포트폴리오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음
 - 규제당국은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 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나 지급능력규제에 대해서는 강화추세에 있으므로 특정상품의 비중이 너무 클 경우 예정이율리스크와 예정사망률 리스크가 커져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개인연금보험이 생보사에서 차지할 중요도는 인정되나 保障性保險의 지속적인 판매확대 등을 통하여 적정한 상품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년동안 실시하여온 質經營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함

마. 보험이미지 제고 및 장기 계약유지 유도

- 보험에서는 일정기간내에서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것이 보험에 대한 이미지 손상의 主要原因으로 지적되어 왔음.
- 과거 생보사의 대표적 연금상품이었던 노후설계(노후복지)연금보험은 3년 정도의 단기상품으로 운용된 경험이 있어 解約還給金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게 되는 기간도 몇 개월에 지나지 않았음.
- 개인연금보험의 조기해약과 관련한 보험 이미지 손상우려가 과거보다 훨씬 크다고 보여짐.
 - o 납입보험료 액수 및 상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게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o 해약에 따른 세금환수액까지 감안한다면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임
- 개인연금보험의 소비자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연금보험의 이미지 손상은 장기적으로 타보험상품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임.
- 따라서 개인연금보험의 유지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노후의료와 노후주택과 같은 실물서비스 제공사업을 개발하여 보험의 이미지를 “노후생활설계의 기본축”으로 인식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 o 일본 생보사의 경우 유료노인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호할증 특약을 개발하여 노후수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금전지급, 수발서비스의 소개, 수발서비스의 직접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음
 - o 특히 협영생명에서는 연금홈을 다섯군데 설립하고, 개호연금특약부 종신형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면 평생 연금홈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상태가 되었을 때 무료로 수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